

「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」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('23. 4. 12.)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 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(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2) 필요성

-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책무 강화하여 장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로 인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고,
- 단기거주시설 입소를 통해 양육에서 벗어나 보호자의 일상생활 영위를 도모하고 거주인들의 돌봄 제공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 지식과 기술, 책임성 담보가 가능한 위탁 추진 필요.

3) 위탁사무의 내용

○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·운영

(시설운영관리, 재정 및 조직운영, 인적자원관리,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)

다. 위탁시설 개요

1) 시 설 명 :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

2) 위 치 : 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35

3) 시설규모 : 지상1층 9동(부지 9,193㎡ 건물 1,652.48㎡)

4) 주요시설

건물별	연면적	주요시설
계	1,652.48㎡	
남자생활관	386.68㎡	남자생활관
여자생활관	278.66㎡	여자생활관
사무실	987.14㎡	사무실, 프로그램실, 식당 등

<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운영 현황 >

◆(운영주체) 사)경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 구미시지부(지부장 직무대행 이미영)

◆(2022. 예산지원) 인건비 및 운영비 927백만원 (도비 20%, 시비 80%)

◆(사업내용) 장애인 일정 기간 보호로 가족의 단기간 휴식 제공

◆ 시설 현황

시설명	시설장	개관일	규 모	종사자 수	예 산	비고
사랑의 쉼 터	김보영	2003.12.30.	지상1층 9동 (부지 9,193㎡ 건물 1,652.48㎡)	19명 (시설장1, 사무국장1, 사회재활지도원15 조리원2)	1,234백만원 (보조금 954, 자부담 280)	

라.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간 (2023. 4. 13. ~ 2028. 4. 12.)

마. 위탁방법 : 위·수탁자 공개모집, 위탁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

바. 위탁예산 : 연간 954백만원 정도(도비 20% 시비 80%)

- '23년 기준 예산
- (자부담) 280백만원 포함

사. 운영체 신청자격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 분야에 대한 공신력, 재정 능력,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법인
- 현재 재직하는 인력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어야 함.
(단, 시설장은 협의 가능)

아. 수탁자 선정 세부 일정

- 공개모집 및 신청 접수 : 2023. 2월 중
-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: 2023. 3월 중
- 위 · 수탁 협약 체결 : 2023. 3월 중

4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인 사랑의 쉼터의 총괄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장애인 거주 시설의 운영과 관리 분야는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관련 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 전문가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법과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으로 <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>를 구성하여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, 공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탄탄히 갖춘 수행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